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특허

## 특허를 출원하여 권리리를 확보하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 것일까요?

**첫째,**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독점배타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주요 수단이다.

**둘째,** 타인의 모방·침해 등에 따른 특허분쟁을 사전예방하거나 관련기술 특허권자와는 상호협력(Cross-License 등)을 통해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발명·기술개발이라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며, 먼저 발명했더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하면 자신은 권리 확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의 발명·기술개발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출원, 권리화하여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타인이 권리를 무단사용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안정되게 추가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해 준다.

지식재산권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독점적 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써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며, 먼저 개발된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넷째,** 특허출원을 할 경우 벤처자금, 기술담보자금 등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자금 및 세제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하여 우수기술로 판정되거나 우수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허청의 벤처기업 확인 추천을 받아 각종 벤처기업 지원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을 담보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에서

지원하는 정부 기술담보사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특허권을 바탕으로 사업화 추진시 『특허기술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산자부, 중기청 등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특허권 보유 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므로 각종 정부 자금활용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특허, 산업체산권이란 무엇인가?

###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 □ 특허

- 기술개발과정에서의 결과물 또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등을 특허출원 할 수 있음.
- 특허는 이전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임.
- 특허에는 기본·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도 있지만 이미 있는 기술을 더 연구발전 시킨 주변·개량기술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예 : 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을 제외하고 생산현장, 기술개발과정, 일상생활 속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특허로 출원하고 보호받을 수 있음.
- 특허권의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 실용신안

-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실용적인 물품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로 특허보다 한단계 낮은 기술로 인식됨.
- '99. 7. 1부터 출원 후 3~6개월이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실시 이후 실용신안은 기술수명주기(Life-Cycle)가 짧은 기술을 보호받기 위하여 주로 활용됨.
- 권리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 의장**

- 차량의 외형 디자인과 같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외형을 보호해 주는 권리임.
- 권리보호기간 : 등록일로부터 15년

**▣ 상표**

- 상표(Trade Mark) : 상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에 대하여 보호해 주는 권리임.
- 서비스표(Service Mark)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 권리보호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 가능)

**▣ 출원후 권리확보까지 소요기간 ('99. 10월 현재)**

특허 : 25개월, 실용신안 : 3~6개월,  
의장 : 6개월, 상표 : 10개월

**출원시 애로사항 및 해결방법은?****▣ 중소기업 등이 특허 출원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출원 및 등록절차 등 산업체산권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 부족, 변리 비용 부담, 특허정보 이용료 부담, 출원 및 등록료 부담 등이다.

**▣ 이에 특허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특허출원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1. 첫째, 출원 및 등록 절차 등 산업체산권 제도 이해를 위하여 『중소기업 특허관리 가이드 북』 등 산재권 전반 안내 책자 발간·배포, 특허청 산하 국제특허연수부의 중소기업 인력대상 교육실시, 중소기업 요청시 심사관 파견 등을 통한 종합 지원사업 실시로 중소기업이 특허출원시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1심사관-1중소기업체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산재권 종합지원을 실시.

둘째, 출원료, 특허정보 이용료, 변리비용 등 특허출원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99. 9월부터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3년분 등록료에 있어 중소기업은 50%, 개인 및 소기업은 70%를 면해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 1월부터 인터넷 특허정보(KIPRIS)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며 변리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특허청 지정 무료변리상담소를 운영하는 등의 제반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II. 특허를 출원한 중소기업에 대해 벤처기업 확인 추천**

▣ 특허청에서는 특허·실용신안·의장을 출원중인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자 원할 경우에,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출원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사관이 출원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한 후 벤처기업 지정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산업체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확보 등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의 특허·실용신안·의장 출원기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가능한 우수기술로 확인·증명해 줌으로써 은행 등 각종 벤처자금 지원기관의 지원을 용이하게 하여 산업체산권의 창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III. 출원료 등 수수료의 감면 및 해외출원비용 지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출원료 등 수수료의 감면**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학생 등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줌으로써 개발기술의 출원 및 권리화를 촉진하고 있다. (단, 상표·서비스표 및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료는 면제 및 감면대상이 아님) 수수료의 면제 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학생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70% 감면 대상 : 개인, 소기업